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신청 안내

❑ 신청요건

◈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**근로,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**

<table>
<tr><td>소득요건
(부부합산)</td><td>◇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<table><tr><th rowspan="2">가구 유형</th><th colspan="3">근로장려금</th><th rowspan="2">자녀장려금</th></tr><tr><th>단독 가구</th><th>홑벌이 가구</th><th>맞벌이 가구</th></tr><tr><td>총소득기준금액</td><td>2,200만 원</td><td>3,200만 원</td><td>3,800만 원</td><td>4,000만 원</td></tr><tr><td>최대지급액</td><td>150만 원</td><td>260만 원</td><td>300만 원</td><td>70만 원</td></tr></table>(가구유형) ('21.12.31.기준)
<table><tr><td>단독가구</td><td>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</td></tr><tr><td>홑벌이가구</td><td>배우자(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)나
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</td></tr><tr><td>맞벌이가구</td><td>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</td></tr></table>1) 배 우 자: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2) 부양자녀: (18세 미만) & (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)
3) 직계존속: (70세 이상) & (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) & (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)
*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</td></tr>
<tr><td>재산요건
(가구원합산)</td><td>◇ 2021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의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(부채는 차감하지 않음)</td></tr>
</table>

❑ 신청기간 : 2022년 5월 1일~ 5월 31일

❑ 신청방법

① ARS 전화 ☎ 1544-9944 (뒷면 참조)

② 손택스(모바일앱) 또는 홈택스(www.hometax.go.kr)

③ 근로장려금 상담센터(상담 및 신청도움 서비스) ☎ 1566-3636

※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(☎126)또는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☎(053)661-7453~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대구지방국세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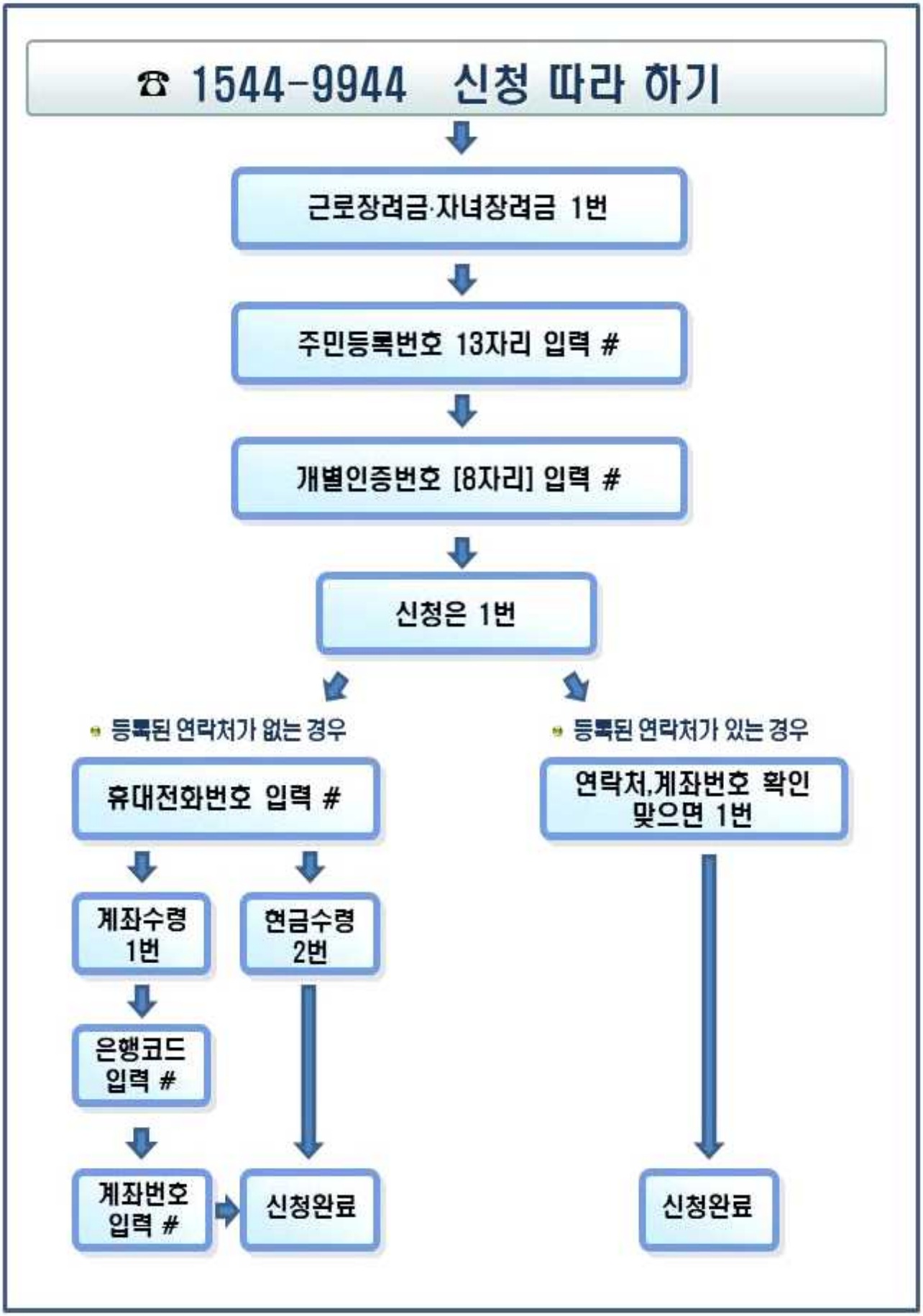
☎ 1544-9944 신청 따라 하기
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1번
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#
개별인증번호 [8자리] 입력 #
신청은 1번
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
등록된 연락처가 있는 경우
휴대전화번호 입력 #
연락처,계좌번호 확인 맞으면 1번
계좌수령 1번
현금수령 2번
은행코드 입력 #
계좌번호 입력 #
신청완료
신청완료